##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5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0.

발 의 자:김현정·박홍배·이기헌

부승찬 • 전재수 • 손명수

이개호・정태호・김기표

강준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채무자회생법")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,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,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로 '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'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,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제2항제2호 삭제).

법률 제 호

##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가맹거래사) ① (생 략)	제27조(가맹거래사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	
될 수 없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	<u>&lt;삭 제&gt;</u>
아니한 자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